

만약 가해자가 내 차를 가져갔다면?
나를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? 다른 식으로 재정적 해를 가한다면?

귀하는 법원 명령 발효 기간동안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의 사용, 소유와 관리 및 해당 기간 동안 만기되는 유치권 또는 저당권 지급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 (가정법, 제6342.5조). 법원은 가정폭력의 결과로 귀하의 동의 없이 특정 채무가 발생했음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.

HERA

housing and
economic
rights advocates

연락처:

(510) 271-8443 내선번호. 300

inquiries@heraca.org

www.heraca.org

P.O. Box 29435

Oakland, CA 94604



본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주 여성 및 소녀 지위 위원회(California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and Girls)의 협찬으로 실현되었습니다.

재정적
학대에 대한
생존자의
권리



법원은 귀하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나 환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.

“피청구인의 학대 또는 그 학대로 인한 실제 신체적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발생한 의료비 및 임시주거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득손실 및 본인부담경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”
(가정법, 제6342조)

집 소유 -CAL. FAM. §§ 6321(A), 6340(C)

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의 일환으로 법원은 접근이 금지된 측에게 가족의 거주지, 상대 배우자의 거주지, 공동거주지,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돌보는 거주지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이는 어느 당사자가 주택의 법적 소유자인지 (또는 임대의 경우 임대 계약자인지)¹ 와 무관합니다. 이는 가정폭력 생존자로 하여금 거주지가 배우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안정된 거처에 머물 수 있도록 합니다.

¹ Cal. Fam. § 6321; 참조, e.g., Nicole G. v. Braithwaite, 49 Cal. App. 5th 990, 993, 262 Cal. Rptr. 3d 918, 920 (2020) (unreported) (“가정폭력예방법 및 가족법 제1조 6340, 6321, 6324 항은 접근이 금지된 측을 거주지에서 퇴거시키고 피해자가 거주지 사용 및 소유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허가한다.”).

주택담보 대출금 납부 -CAL. FAM. § 6324

가정폭력 임시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의 일환으로, 법원은 이 명령이 발효되는 동안 만기되는 유치권 또는 저당권 (주택담보 대출금 납부 등)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²

생존자의 이름이 주택담보 대출에 기재되어 있으나 차용증에는 없는 경우, 은행은 생존자의 주택담보 대출금 납부를 거절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생존자는 법원에 차용증 및 채무를 생존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원할 수 있으며, 최소한 재용자³를 통한 주택담보 대출 상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
이혼 계류 중 이전 - CAL. FAM. § 2040

가정폭력 생존자와 배우자가 이혼을 진행 중인 동안, 법원은 자동으로 임시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. →

² Cal. Fam. Code § 6324.

³ Loughran v. Lemmon, 19 App. D.C. 141, 149 (D.C. Cir. 1901); NCLC, Special Issue: 알류 및 가정폭력 생존자, NCLC 보고서 파산 및 알류 제27호, 14, 16 (1월 & amp; 2009년 2월).

이는 법원에 의하여 모든 재산소유권이 결정되고 해당 결정이 공표될 때까지 어느 한쪽 배우자가 거주지에 대한 어떠한 지분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⁴ 이러한 보호조치는 가정폭력 생존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으나, 가해자가 자신의 단독 명의로 된 집을 매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그뿐 아니라 본 자동 임시 접근금지명령은 이혼 진행 중 어느 한 배우자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방지하며, 이는 가해자가 집의 순자산을 선제적으로 박탈하려는 시도에 대한 일정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⁵

가해자가 귀하의 명의로 빚을 내기 위해 신원을 도용했습니까?

귀하의 명의로 빚을 냈습니까? 민법 제1788.18 조는 "신원 도용 범죄"의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 도용으로 발생한 빚을 회수하려는 채권 추심업체의 시도에 대해 분쟁 및 지연을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신원도용 피해자가 신원도용과 추심 중인 특정채무의 관계를 입증하는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즉시, 추심업체는 이를 심사 후 분쟁 대상 특정채무에 대한 책임이 해당 채무자에게 있다는 결론에 이를 때까지 추심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.⁶

⁴ Cal. Fam. Code § 2040.

⁵ Cal. Fam. Code § 2040(a)(2)(A).

⁶ Cal. Civil Code § 1788.18(d).